

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공사사업자 선정 공고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5조 및 “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제24조에 따라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 답십리래미안위브 아파트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공사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***** 아 래 *****

1. 사업개요

가. 계약기간 : 착공일부터 30일 이내

나. 공사내용 :

-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공사
- ② 현대 LXVF7 15인승 81대, 현대 SSVF7 썬큰 이동용 2대. 합83대.
※ 설치 및 부품 교체시 반드시 당 아파트 승강기 기종의 제조사 순정부품사용
- ③ 공사내역 : 정기검사 지적 사항

품 명	규 격	단 위	수량	비 고 (해당동호기)
도어세이프티 라인	5M 2P	m	각5	102-2,103-3,108-1,108-2,202-2,203-2,203-3, 204-1,204-2,301-1,301-2,304-1,307-1,307-2, 311-1,311-3,401-2,404-1,404-2,407-1
도어 스위치	HY-L707-D	EA	각1	102-2,103-3,108-1,108-2,202-2,203-3,204-1, 204-2,301-1,301-2,304-1,307-1,307-2,311-1, 311-3,404-1,404-2,407-1,
멀티빔센서	Ass'y	EA	각1	301-1,301-2,307-1,307-2,308-3,309-2,311-1
비상전원장치	JEM-800	EA	각1	309-1,309-2
자동구출운전 배터리	12V 2.9A	EA	2	107동 셔틀
카도어 연동로프	OP900	m	6	102-2
로프브레이크	SRG-M2(Φ 12X5본)	EA	1	308-2
비상통화보드	OPB phone	EA	1	304-1
토가드		EA	각1	305-1,305-2
등기구	AC220~225	EA	1	302-1,306-1,306-2,307-3,308-1,403-3
조속기 텐션 폴리 Ass'y	240파이	EA	1	401-1
메인로프 로프커팅	2:1 5본	식		303-1

2. 현장설명회

가.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.

3.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

- 가. 입찰의 종류 : 일반경쟁
- 나. 낙찰의 방법 : 최저가낙찰제

4.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

- 가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제27조에 따른 서류
 - 1) 입찰서 1부.(별지서식 사용)
 - 2) 승강기 유지관리업등록 면허증 1부.
 - 3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 - 4)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.
 - 5)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.(전자발급 포함)
 - 6) 산출내역서(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/자체서식 사용)1부.
 - 7)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.
 - 8)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.
 - 9)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
 -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확인서 1부.
- 나. 서식(첨부) : 입찰서
 - 1) 제출방법 : k-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으로 제출(www.k-apt.go.kr)
 - 2) 마감시한 : 2026.10.13

5. 개찰의 일시·장소

- 가. 개찰일시 : 2026.10.13. 10:00
- 나. 개찰장소 : 담당자 pc

6.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

- 가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 제26조제1항(참가자격의 제한)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.

7.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,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

- 가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 [별표3]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.
- 나. 무효로 하는 입찰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함(공문, 팩스, 전화, 문자 중 택일)

8. 입찰관련 유의사항(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)

- 가. 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.
- 나.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, 변경할 수 없으며,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,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.
- 다. 입찰가액은 총금액(부가세 별도)으로 작성하고,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

회사 양식으로 작성
라. 공사대금 지급은 공사 완료 후에 발주자의 준공검사 승인 후 지급함.

9.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

- 가.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한다.
- 나. 계약보증금 :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(공제증권 또는 보증서)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.(현금납부는 받지 않음)
- 다.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 제29조(계약체결)에 따른다.

10.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

- 가.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(공제증권 또는 보증서)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나. 입찰보증증권 발행용 사업자등록번호 : 413-82-60495
- 다.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.
- 라. 입찰보증금, 계약보증금,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는 받지 않음.
- 마.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 제31조(입찰보증금 등)에 따른다.

11. 선정지침 제32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율

- 가.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계약금액의 10%로하고,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별표4에 따라 3년으로 한다.
- 나. 하자보수보증금은 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”에 따른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(하자보수보증증권 포함)하여야 한다.

12. 기타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제출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에는 낙찰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.
- 나.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에 따르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(☎ 02-2249-8682)로 문의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06일

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[직인생략]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입찰서			
*참가번호		입찰명칭	
입찰가액	\		
입찰보증금	\		
위와 같이 입찰보증금(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)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. 년 월 일			
입찰자			
상호(성명)			
* 대표자	성명		
법인등록번호 (개인은 생년월일)			
사업자등록번호			
주소(전화번호)			
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			
기재방법	*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.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)